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업무가이드

2021. 1.



동 지침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참고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에 맞게 구성한 기본 업무가이드입니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으로 학교·돌봄기관 휴원, 대상자 대면 제약 등에 따라 아동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사정 및 특성에 따라 해당 가이드를 적절히 적용하시기 바라며, 대상자들도 대면 중심의 업무추진 방향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진경과

- ('20.2.5.)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대응TF 구축
- ('20.4.8.~6.30.)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구축
- ('20.5.12.) 코로나19 관련 아동복지 현장종사자 간담회 개최
- ('20.6.17.)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아동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 ('20.7.)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 대응활동기록서 발간
- ('20.9.25.) ‘감염병 시대, 아동보호안전망으로의 대응방안 모색’ 1차 간담회 개최
 - * 감염병전문가, 아동복지전문가와 의 논의결과, 아동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자 대면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전제)
- ('20.10.7.) ‘감염병 시대, 아동보호안전망으로의 대응방안 모색’ 2차 간담회 개최
- ('20.1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업무가이드 자문·배포

※ 감염병·아동복지전문가 자문

이재갑 교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지영 교수 (중앙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오승환 교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추진 배경

□ 각 대상·사업특성별 차별화된 업무지침의 필요성 대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으로 학교·돌봄기관 휴원, 가정방문 제약됨에 따라 아동 사각지대 발생
 - 방역조치 지침과 현장육구(대면 필요아동의 가정방문 및 개입 등)가 상충됨에 따라 업무 수행 시, 혼란 가중
 - * 아동보호안전망으로의 간담회(9.25.) 논의결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가정방문 진행 필요
- 이에, 각 대상·분야·사업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업무지침 필요
 - * ▲사업특성을 반영한 방역수칙, ▲지속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업무방안 등

II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 코로나19 관련 근무자 관리, 시설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수행
 - * 임산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고령자(만65세) 등은 책임자 지정 시 제외
 - 종사자·이용자·방문자 등 관리명단 작성·보관(주소, 연락처, 근무시간 또는 방문시간, 발열·호흡기 증상유무 등)
- 의심증상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아동 및 종사자의 감염병 발병 및 의심사례(발열 및 기침) 시, 신속한 전달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비
 -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 관내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지정)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되, 종사자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근 기관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
- (역할)
 - 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 숙지 및 공동체 특성에 따른 세부방역관리 지침 마련
 - 감염병 관련 정보 수시 확인 후, 대상자, 종사자에게 신속 제공
 - ②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 및 아동 관련 코로나19 예방관리 수행
 - 기관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 매일 업무시작 전 방역지침 교육 및 대상자 안내
 - 기관 내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및 비상연락체계 소속 담당자에게 연락
 - ③ 방역지침에 따른 이행결과 점검·평가, 개선방안 제시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1) 종사자,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행동요령(가정 내·기관 이용 시)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홍보물* 부착
 -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a.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코로나19 증상 의심발현 시, 출근 또는 기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 적극 안내 및 관리
 - 가정 내 의심사례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
 - * 가정통신문, 키즈노트 등 무료 어플 활용

2) 종사자·이용자 등 건강관리 강화

-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 철저 안내
- 1일 2회(4시간마다 1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적극 안내 및 관리
- 의심증상자 발생 시, 의심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 공간(1층) 마련
 - 1층이 불가한 경우, 층간 이동 최소화 및 신속한 귀가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지정,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다음과 같은 종사자 또는 대상자는 출근 또는 일시적 이용 제한
 - 다음과 같은 경우 휴가, 재택근무 사용 시, 불이익 주지 않도록 주의

구분	대처방법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 즉각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진료 * 자차 활용, 마스크 착용
해외 여행력	-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통보받은 경우, 자택 내 2주간 자가격리 준수
확진자와의 접촉	

- 전담관리인* 지정을 통해 해당자의 건강상태 주기적으로 확인
 - (이용자) 유선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매일)
 - (종사자) 1일 2회(오전·오후) 건강상태 자체점검 후, 해당 내용 보고
- * 감염관리책임자는 전담관리인에서 배제

3) 기관 환경 위생관리

- 기관 창문 수시 개방 등 공기정화 및 주기적 환기 강화(2시간마다 1회)
 - *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는 가동 금지
-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강화
 -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등 1일 2회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소독 강화

❖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활용 소독방법

- 모든 살균소독제는 묻혀서(뿌리지 않기), 닦아내야 함(방치하지 않기)
 - (준비) 창을 열어 충분한 환기 방안 확보
 - (소독)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 락스 500ml이상~3L미만 용기의 뚜껑 용량 10ml
- 3L이상~5.5L 이하 제품 뚜껑의 용량은 15ml

- (후처리) 소독에 사용한 천(타올) 등 소독 시 발생한 폐기물은 봉투에 넣어서 폐기

- 화장실 등 손세척제(액체 비누, 손세정제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필수 착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감염병 대응가이드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가정방문 · 사례관리		■ 가정방문·사례관리 대면 필수대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무관, 전대상 대면상담 원칙) - 단, 아동 및 가족구성원 중 자가격리 또는 발열(37.5℃),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비대면 실시 * 가정위탁의 경우, '전 대상'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위탁부모 가정환경조사, 가정위탁배치 3~6개월 미만 위탁아동(최소 1회 이상)은 특히 대면 필수 실시					
		■ 드림스타트 집단프로그램 및 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정상 운영	■ 드림스타트 집단프로그램(2인 이상) 비대면 운영 ■ 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인원 제한(50인 미만)		■ 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인원 제한(10인 미만)		
학대 피해 아동	■ 학대조사 및 사례관리 관련 전대상 대면 필수	■ 대면 필수대상 - (아동학대 조사) 학대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의료인, 교사) - (아동학대 사례관리) 심층사례관리대상, 가정복귀 프로그램* *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 가능 ■ 비대면 가능 대상 및 업무절차 - (아동학대 조사) 주변인(의료인, 교사 제외) - (아동학대 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대상* * 대면·비대면 혼합형태로 실시가능하며, 비대면 시 아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활용					
시설	생활	■ 일상적 시설운영 - 교육활동 실내·외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아동 외박 제한적 가능	■ 교육·활동 인원 제한 - 현원의 50% 이하 (실내외 최대 50인)	■ 교육·활동 인원 제한 - 현원의 30% 이하 (실내외 최대 30인)	■ 개인방역 강화 및 특별·외부 활동 최소화 ■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 아동 외박 원칙적 금지					
시설	이용	■ 일상적 시설 운영 - (실내·외활동) 소그룹 활동 중심 운영 권고, 학교 원격학습 지원 * 가급적 해당 공간의 4㎡ 당 1명 범위 내 운영, 격렬한 신체활동 자제 - (급·간식) 자리지정 및 투명가림막 설치 하에 급식 제공 * 띄워앉기,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좌석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 휴원(가정 돌봄 권고) 및 긴급 돌봄 서비스는 제공 유지	

1 가정방문·사례관리

- 전단계 모두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대상' 대면 가정방문·사례관리 필수 실시
 - 1.5단계부터는 가정방문 시간 축소(2m 거리유지, 30분 이내)하고,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집단프로그램 인원 에 따라 비대면 실시

구분	1~1.5단계	2~2.5단계	3단계
드림스타트 집단 프로그램	평상시와 동일	2인 이상 집단프로그램 비대면 운영	
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평상시와 동일	50인 미만	10인 미만

※ 가정위탁의 경우 단계별 원칙은 준수하되, 지자체별 행정명령 있을 시 해당 내용 근거하여 추진

- 2.5단계부터는 대상자 대면 시, 안면보호구, 일회용 위생장갑 등 필수 착용 개인보호구 강화

*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섉�드)의 경우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2 아동학대 대응

- 1단계 시, 방역수칙 준수 하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대상* 대면 실시
 - * 학대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정보제공자 주변인
- 1.5단계부터 대면·비대면 대상 구분 실시
 -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대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의료인, 교사), 심층사례관리대상 대면 필수
 - 주변인(의료인, 교사 제외)은 비대면 가능, 일반사례관리대상은 불가피한 경우 대면·비대면 혼합형태 실시 가능

3 시설 운영(생활시설,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생활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 일상적 운영(1단계~2.5단계), 특별·외부 활동 최소화(3단계)로 구분 운영
 - 실내마스크의 경우, 1단계~2.5단계는 종사자 및 10인 이상 시설 아동 전원, 3단계는 시설 인원 수 상관없이 전원 착용 의무
 - * 24개월 미만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 탈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착용 예외
 - * 아동의 경우, 세대(개인 방, 거실, 화장실)에서만 마스크 착용 제외

- 식사·의 경우, 식탁 간 간격 1m 이상 거리두기(띄워앉기 또는 가림막 설치)
- 활동·교육의 경우, 1단계~1.5단계는 실내·외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단계는 종사자 포함 현원의 50%이하(실내·외 최대 50인), 2.5단계는 종사자 포함 현원의 30%이하(실내·외 최대 30인) 운영 가능, 3단계는 운영 연기
- * 3단계 시, 숲, 놀이시설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원외 활동 지원 고려

□ 이용시설

- 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 일상적 운영(1단계~2.5단계), 휴원 권고 및 긴급돌봄서비스 유지(3단계)로 구분 운영
- 실내·외 활동의 경우, 1단계~2.5단계는 소그룹 활동 중심 운영을 권고*, 3단계는 개인활동으로 운영
- * 시설 내 아동 간 1m 이상 거리두도록 지도, 가급적 해당 공간의 4㎡ 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 급·간식은 1단계~2.5단계는 투명가림막 설치 및 지정좌석제 실시, 3단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급식카드 등 활용*
- * 급식 제공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급식카드 지원, 도시락 배달 등 활용

1단계

- ◆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 대상’ 대면 가정방문 · 사례관리 필수 실시
- 가정방문 시, 방문시간은 평상시와 동일
 - 상담 시 전원(대상자, 종사자) 마스크 필수 착용 및 1m 거리 유지
 - * 가정위탁의 경우, ‘전 대상’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위탁부모 가정환경조사, 가정위탁배치 3~6개월 미만 위탁아동(최소 1회 이상)은 특히 대면 필수 실시

○ 가정방문 전

- 가정 및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인
 - * 아동 등 가족구성원 중 자가격리, 발열(37.5℃)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연기 또는 복귀
- 대면상담시간 최소화를 위한 대면조사항목 사전 숙지
 - * 보호자 및 아동 면담 가능시간 파악, 방문목적에 맞는 확인사항 정리 등
- 가정방문 전 개인위생(손씻기 등) 수칙 준수 철저
- 종사자 가정방문 30분 전 실내 환기

○ 가정방문 시

- 가정 출입 전 현관 앞에서 종사자·가족구성원 모두 휴대용 손소독제 필수 사용(휴대용 손소독제 미지참 시, 가정출입 후 즉각적으로 손세정 실시)
 - * 대상자에게 종사자의 손소독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상호 간 불안감 해소 필요
- 현관 앞에서 대상자, 종사자 발열체크
- 상담 시, 창문 개방 등 환기 가능한 상태에서 거리유지* 후 진행
 - * 아동 · 부모 · 종사자 간 1m, 거리를 고려하여 상담녹음 요청

- 상담 시, 아동·부모·종사자 전원 마스크(KF94 이상) 필수 착용
 - 상황에 따라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위생장갑 등 사용 고려
 - * 24개월 미만의 유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 미착용 가능
- 가정 내 아동보호상황 확인

- 재택학습 등 가정돌봄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 내 아동학습·아동보호상황 주기적 점검 필요
- (주요내용) 가정 내 보호자 여부 및 아동안전, 건강, 학습상황 등 확인·점검
 - 아동 양육환경, 욕구 등 아동 양육태도 및 가정돌봄환경
 - * 학대 의심 시, 아동학대(112) 신고
 - 아동 식사, 심리정서 등 건강상태
 - * 아동 결식여부, 필요 시 긴급자원 연계(도시락, 식품권 등)
 - 아동 온라인 학습상황(원격학습상황), 학습 시 애로사항, 미이수 상황
 - * 학습공간, 충분한 학습기기 보유여부, 아동별 시간표 및 교구, 수업방식 등
 - 방역물품(마스크, 소독물품 등)이 없는 경우,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

○ 가정방문 후

- 종사자 및 대상자 모두 상담 시 사용한 마스크 폐기 및 손 위생관리 실시

❖ 개인보호구(마스크 등)탈의순서

- ① 일회용 장갑 탈의 → ② 손소독 실시* → ③ 안면보호구 또는 고글 제거 →
 - ④ 마스크 전면부를 만지지 말고 끈 부분을 잡아 마스크 제거 → ⑤ 손소독 실시
- *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40~60초간 손씻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폐기방법

- 소독제 분사 또는 비닐봉지 밀봉 후, 종량제봉투에 버리기

- 대상자는 종사자 방문 후, 아래 사항 실시
 - 창문 개방 등 30분 간 환기
 - 소독제를 문힌 천 등을 활용하여 가정 소독

1.5단계~3단계

◆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 대상’ 대면 가정방문·사례관리 필수 실시

- 가정방문 시, 방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
- 단계별 개인보호구 필수 착용 및 2m 거리 유지

1.5단계·2단계	2.5단계·3단계
마스크	마스크,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섉�드), 일회용 위생장갑

※ 단계별 개인보호구(2.5단계~) 중 안면보호구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 가정위탁의 경우, ‘전 대상’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위탁부모 가정환경조사, 가정위탁배치 3~6개월 미만 위탁아동(최소 1회 이상)은 특히 대면 필수 실시

◆ 모든 대상 대면으로 진행하되, 아래 상황의 경우 비대면 실시

- 아동 등 가족구성원 중 자가격리 또는 발열(37.5℃),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대면

* 가정방문 전·후 지침은 1단계와 동일

○ 가정방문 시 (방문시간 30분 이내)

- 상담 시, 창문 개방 등 환기 가능한 상태에서 거리유지* 후 진행
- * 아동·부모·종사자 간 2m, 거리를 고려하여 상담녹음 요청
- 아동 필수 대면을 통해 아동 성장상태 및 신체 상흔 등 안전 확인
- 아동 주거, 식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직접·연계 서비스 지원 시, 대면 최소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지원물품 등)
- * 아동·부모·종사자 간 2m 거리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물품 문 앞 제공 등
- 이 외 지침 1단계 동일

○ 집단 프로그램 운영

- 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참여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참여인원 기준>

구분	1~1.5단계	2~2.5단계	3단계
참여인원 제한 기준	평상시와 동일	50인 미만	10인 미만

※ 가정위탁의 경우 단계별 원칙은 준수하되, 지자체별 행정명령 있을 시 해당 내용 근거하여 추진

비대면

- 비대면 대상을 유선 · 화상 · 이메일을 활용하여 상담
 - 영상통화 등 대상자 얼굴 · 가정환경 관찰이 가능한 방법 활용
 - * 빠른 시일 내 가정방문 및 대면확인 진행
 - 아동 · 부모 건강상태 수시체크, 감염병 예방 기본수칙 재안내
- 가정 외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통한 대상자 일상정보 추가 확인
 - 대상자 이웃, 학교 담임교사, 보건소 직원 등 활용
 - 유선, 이메일 등 비대면 방법을 통해 대상자 정보 확인
- 집단 프로그램 운영
 - 드림스타트 집단 프로그램(2인 이상) 진행 시, 2단계부터 비대면 운영

❖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서비스, 가정위탁 지원기구 운영 지침

① 드림스타트(아동복지기관협의체 등)

- 방역용품 착용 후, 창문 개방 등 환기 가능한 상태에서 거리 유지 대면 진행
-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시스템(온나라 등) 활용, 서면 불가

② 아동보호서비스(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정위탁(운영위원회)

- 방역용품 착용 후, 창문 개방 등 환기 가능한 상태에서 거리 유지 대면 진행
-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시스템(온나라 등) 활용, 서면 가능

1단계

- ◆ 비상업무체계 구축 및 전인원 정상 근무 실시
- ◆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 대상’ 대면 아동학대조사·사례관리 필수 실시
 - 학대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정보제공자 주변인 모두 포함
 - 전원 마스크 필수 착용
- ◆ 가정복귀 의사 확인 시, 대면방식으로 실시

기관운영 지침

○ 종사자 비상업무체계¹⁾ 구축 및 전인원 정상 근무 실시

- 유사 시 대비하여 종사자 비상업무체계 구축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
- 종사자 전원 마스크 필수 착용 후 전인원 근무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전환

❖ 종사자 유연근무(재택근무) 시 유의사항

- 유선 사례관리, 조사서 작성 등 물리적 접촉 또는 시스템 사용 이외의 업무 진행
-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특성 상, 재택근무 종사자 모두 별도의 보안서약서 작성
- 업무용 휴대기기 사용 기간엄수

- 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1) 비상업무체계란, 기관장·각 팀장을 포함(필수인력)하여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기관방역 업무,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 등을 위한 최소인력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

학대대응업무 지침

○ 아동학대 조사

-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시, 현장 즉각 출동(대면 현장조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휴대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 준수
 - 휴대용 소독제품 구비를 통해 가정 내 간단한 방역처리(손잡이 소독 등) 후 상담 실시
- 상담 시 30분 이상 창문 개방을 통해 실내 환기 진행
- 상담 시 아동, 부모, 종사자, 신고자 등 전원 마스크 필수 착용
- 아동분리보호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후 보호시설 입소
 - 증상 발현 시,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 자제
 - 보호시설 자가격리 공간 내 3~4일간 경과 관찰 후, 입소 처리

○ 아동학대 사례관리

- 사례관리대상 중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상아동 확인 및 보고
 - * 관련 아동 확인 시, 1일 1회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상황 보고
- 종사자는 가정 출입 시, 현관 앞에서 휴대용 손소독제 사용
 - * 방역지침 준수 및 안내를 통한 대상자 불안감 해소 필요
- 상담 시 아동, 부모, 종사자 전원 마스크 필수 착용
-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필수
 - 시설, 가정 내 대면상담 시, 1시간 2회 환기 진행

1.5단계 · 2단계

- ◆ 학대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의료인, 교사) 대면 조사 필수
 - 주변인(의료인, 교사 제외) 조사의 경우, 비대면(유선, 서면) 진행 가능
- ◆ 일반사례관리 대상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로 실시 가능(2개월에 총2회(대면 1회, 비대면 1회))
 -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시,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되, 아동의 경우 시설협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가능

기관운영 지침

○ 종사자 비상업무체계 일부 전환

- 필수 인력(기관장, 각 팀장) 및 추가 필요인력으로 구성
- 종사자 업무일정을 조정하여 전인원 1℞ 수준으로 유연·재택근무 권고
- 단계 격상에 따른 업무 간소화 및 신속대응계획 수립

◆ 종사자 업무형태별 업무분장

- (상근자) 현장조사, 조치 업무 신속 대응
- (재택근무자) 유선 사례관리, 기개입 기록 업무 등 수행

학대대응업무 지침

○ 아동학대 조사

- 학대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의료인, 교사) 대면 조사 필수 진행
 - 의료인, 교사를 제외한 주변인의 경우 비대면 실시 가능(유선, 서면)
- 아동분리보호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보호시설 입소
 -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보호시설 내 자가격리 공간에서 대기 후, 입소 처리
 - * 지역보건소, 의료기관 연계
- 이 외 1단계와 동일

○ 사례관리

- 사례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자 초기 면접 시 피해아동 및 아동 학대행위자 대면 상담 필수 원칙
- 일반사례관리 대상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면·비대면 혼합형태 실시 가능(2개월에 총2회(대면 1회, 비대면 1회))
 - 비대면 시, 아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활용
 - * 코로나19를 사유로 대면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동행·협조를 통한 방문 및 안전확인 수행
-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을 통한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 * 불가피한 경우, 보호시설 협조를 통해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 가정방문 시 방역 수칙

- 가정 출입 시, 현관 앞에서 휴대용 손소독제 사용 및 발열체크 실시
 - * 방역지침 준수 및 안내를 통한 대상자 불안감 해소 필요
- 조사 및 상담 시, 아동·종사자 등 전원 마스크 필수 착용
- 필요시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 실드 등)·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2.5단계 · 3단계

- ◆ 아동학대 조사·사례관리 대면 필수 대상은 1.5단계·2단계와 동일
 - 단, 사례관리의 경우, 기존 사례관리 목표 조정 가능

※ 필수적인 현장업무를 제외하고, 비대면 방법으로 아동학대 대응

기관운영 지침

- 종사자 비상업무체계 일부 전환
 - 종사자 전인원 1/2 수준으로 유연 · 재택근무 권고
 - 이 외 1.5단계 · 2단계와 동일

학대대응업무 지침

- 아동학대 조사
 - 학대조사인력 인원 간소화(학대조사인력 2인 → 1인)
 - * 학대조사인력 1인 + 경찰 1인 동행으로 간소화
 - 이 외 1.5단계 · 2단계와 동일
- 사례관리
 - 기존 사례관리 목표 축소 조정 가능하나, 축소 조정 시 아동 안전 점검 목표 상향 조정
 - 이 외 1.5단계 · 2단계와 동일

3

시설 운영가이드 (생활시설, 이용시설)

3-1

생활시설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등)

1단계~2.5단계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 시설운영

- (실내마스크) 종사자 전원, 10인 이상 시설 아동 전원 착용
 - * 아동은 세대(개인 방, 거실, 화장실)에서만 마스크 착용 제외
- (식사) 수칙 준수 하에 식사 운영
 - * 자리 간 거리두기(1m 이상), 가림막 설치
- (교육·활동) 수칙 준수 하에 인원 제한을 통한 운영

구분	1단계·1.5단계	2단계	2.5단계
실내·외 프로그램	해당 공간의 4㎡ 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종사자포함 현원의 50%이하(최대 50인)	종사자포함 현원의 30%이하(최대 30인)
아동 외박	제한적 가능	원칙적 금지	

◆ 외부인 출입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기관 운영지침

○ 방역수칙

- (실내마스크) 종사자는 모든 공간에서 전원 착용, 아동은 10인 이상 시설 아동 착용(아동은 세대(개인 방, 거실, 화장실)에서만 마스크 착용 제외)
 - * 24개월 미만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 탈·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착용 예외
- (증상 확인) 1일 2회 이상 체온측정 및 대장 관리
- (위생관리) 출입구 및 시설 내 방역 관련 물품(소독제, 체온계 등) 비치, 소독 및 환기(1일 2회 이상)
- (기타) 공용 공간(프로그램실, 식당 등) 이용 시 안전거리 유지(2m(최소 1m))

○ 식사

- 자리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앉기 또는 가림막 설치) ※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 제외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활동·교육운영 * 전원 마스크 착용 필수, 관리자 손소독제 지참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원칙으로 특별·외부활동, 집단행사 및 교육 운영

구분	활동·교육 운영	외박
1~1.5단계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가능 * 방역 조치,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박 제한 가능
2단계	종사자 포함 현원의 50% 이하 (실내·외 최대 50인)	원칙적 금지 * 수업을 위한 등교, 학원수업, 심리치료 등 제한적인 경우 외박 가능
2.5단계	종사자 포함 현원의 30% 이하 (실내·외 최대 30인)	

※ 특별활동의 경우, 외부강사 건강상태점검 및 밀접접촉 최소화
외부활동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하되 밀집도·밀폐도 고려

○ 공용차량

- 차량운전자·탑승자 마스크 필수 착용, 운행 전후 소독을 통한 공용차량 운행

3단계

- ◆ 개인방역 강화 및 특별·외부활동 최소화를 통한 시설운영
 - (실내마스크) 종사자 및 아동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 아동은 세대(개인 방, 거실, 화장실)에서만 마스크 착용 제외
 - (교육·활동) 운영 연기
- ◆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불가피한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 우선 확인)

기관 운영지침

○ 방역수칙

- 종사자는 모든 공간에서 전원 마스크 착용
-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세대(개인 방, 거실, 화장실)에서만 마스크 착용 제외)
 - * 24개월 미만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 탈·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착용 예외
- 1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실시(아침, 점심, 저녁)
- 이 외 지침 1단계 동일

○ 식사

- 시설 내 상황을 고려하여 동시 식사인원 최소화
- 이 외 지침 1단계~2.5단계와 동일

○ 활동·교육운영 * 전원 마스크 착용 필수, 관리자 손소독제 지참

- 특별·외부활동, 아동 외박, 공용차량 운행 모두 금지
- 집단행사 및 교육 연기

◆ 뉴노멀시대 집단생활시설 아동의 발달권보장 지침(안)

- (필요성) 공공시설 휴관 장기화로 취약계층 아동의 적극적 발달권 보장을 위한 신체·문화 외부활동 지원 필요
- (추진방안) 원외 활동으로 외부 사람들이 없고,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숲, 놀이시설 등 공공시설)를 선정*하여 생활시설별 이용
 - * 복지부와 보장원이 해당부처와 협의 후 별도 안내
 - ** 공공시설 이용 시 이동을 위한 차량, 식사 및 간식비 등 제공

1단계~2.5단계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 시설운영

- (실내·외활동) 소그룹 활동 프로그램 중심 운영 권고

- 집단지도실, 활동실 등 시설 내 아동 간 1m 이상 거리 두도록 지도

- 실내·외에서 가급적 해당 공간의 4m² 당 1명 범위 내 운영

- * (1.5단계) 격렬한 신체활동 자제, (2단계~)격렬한 신체활동 금지

- (급·간식) 자리지정 및 투명가림막 설치 하에 급식 제공

◆ 외부인 출입 제한(자원봉사자 등 방문자 부득이한 출입 시 관리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기관 운영지침

○ 일과준비

- 기관 입출입자에 대해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소독) 철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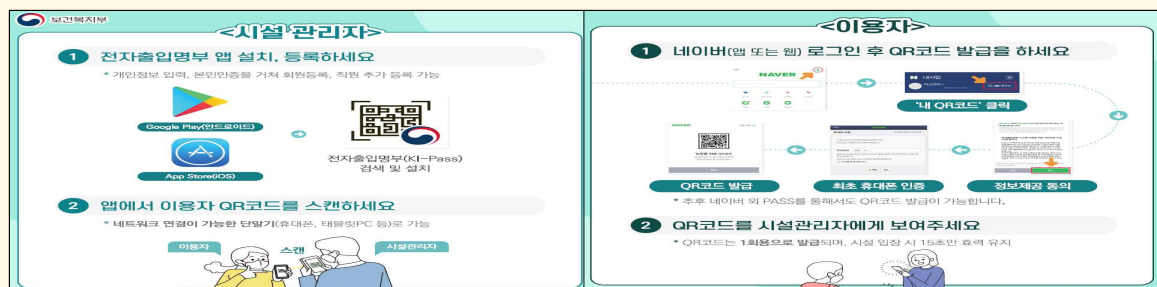
- 기관 입출입자 대해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및 명단 작성·보관

-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체온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 ① 시설 태블릿PC 또는 센터장 휴대폰 내 전자출입명부(KI-Pass)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

- ② 종사자 및 이용아동 외 입출입자 QR코드 인증을 통해 출입자 관리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출입문, 창문 개방을 통해 모두 환기(일 2회 이상 자주)

○ 프로그램 운영

- 실내·외 활동 (소그룹 활동 중심 운영 권고, 학교 원격수업 지원)
 - 프로그램 방식, 이동 동선 등 프로그램 사전 계획 수립
 - 프로그램 진행 시, 환기 및 종사자·아동 마스크 착용
 - 프로그램 진행 시, 1m 이상 거리 두도록 지도
 - 프로그램 진행 시, 4m² 당 1명 범위 내 자리 배치·인원 제한 권고
 - 비말이 많이 발생하거나 밀접접촉이 가능한 프로그램 지양
 - * (1.5단계) 격렬한 신체활동 자제, (2단계~) 격렬한 신체활동 금지
 - 시설이용 아동의 학교 원격수업 지원
- 개인활동
 - 프로그램 미참여 아동의 미디어 중독예방을 위해 수시 확인·지도

○ 급·간식 (자리지정 및 투명가림막 설치를 통한 급식 제공)

- 급·간식은 교차로 실시하고 투명가림막 설치 및 적절한 거리를 둔 자리 배치
- 식사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 급·간식 시 아동 간 투명가림막 설치(앞, 좌, 우) 및 지정좌석제 실시

◆ 투명 가림막 설치 및 관리

- (설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행 시, 필수 설치(앞, 좌, 우)



- (관리) 지정좌석제, 청결관리

- ① 지정좌석제: 가림막에 연번 표기 및 지정좌석제 시행
- ② 청결관리
 - (아동) 식사 후 지급받은 알콜솜으로 본인 칸막이 닦을 수 있도록 지도
 - (종사자) 일과 마무리 시, 최종 청결상태 확인 및 조치

- 급·간식 전 손소독 철저(30초 이상 손씻기, 손소독제 이용 등)
 - 공용화장실 사용 시, 종사자 함께 이동 및 순차적 손씻기 지도
- 급·간식 시 자리이동 및 아동 간 대화 자제하도록 지도
- 급·간식 후, 자리 청소 및 식기류 청결히 세척 후 보관

○ 일과마무리

- 미출석 아동의 가정돌봄상황 모니터링

- 안부전화, 긴급돌봄 수요, 건강상태, 급식상황 등의 상황 점검
- 보호자를 통해 점검하되, 상황*에 따라 아동과의 연락을 통해 교차 확인

* 평소 관찰 및 상담 시, 보호자의 방임 등이 우려되는 아동 등

<미출석 아동 모니터링 가이드>

영역		모니터링 사항
도입		인사 및 전화 사유(아동의 시설 미이용) 설명
아동 안부 확인	사유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유 확인
	안전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등 아동의 현 위치 파악
	건강	아동의 건강상태(상해, 질병, 발열) 확인
	급식	아동 식사 여부 확인
	일과	등교 또는 원격수업 여부 확인,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 등 확인
종결		익일 센터 등원 여부 확인 및 통화 종결

- 시설 마감 시, 공용물건(출입문, 손잡이, 난간, 문고리, 스위치, 키보드 교구 등)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창 개방 등 환기상태에서 천 등에 소독제를 묻혀 닦기(분사하는 형태 소독 지양)

- 종사자 일과 마무리 후, 밀집도 높은 장소로의 외출 자제

* 시설 내 종사자로 인한 이용자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감염관리 철저

- 충분한 휴식, 전문가 등 감염병 관련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 사용하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 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입소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3단계

◆ 시설 휴원 권고(가정돌봄 우선) 및 긴급돌봄 등 유지

- 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서비스 제공
-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활동으로 운영
- 출입자, 물품·시설·공간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

기관 운영지침

○ 긴급돌봄

- 휴원 시에도 긴급돌봄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사자는 정상근무하되, 돌봄수요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당번제 운영 가능
- 돌봄에 필요한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
 - 실내외활동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 활동으로 운영
 - * 급식 제공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급식카드 지원, 도시락 배달 등 활용

○ 안부확인

- 각 센터는 매일 가정 내 돌봄 아동에 대해 안부확인을 문자,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
 - * 안부확인 시, 1단계~2.5단계의 <미출석 아동 모니터링 가이드> 참조

◆ 돌봄공백 발생 시 대응

- 아동의 개인별 욕구 및 사정에 맞게 지역자원, 친인척 등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최적의 돌봄서비스 제공